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202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I. 제 출 배 경	1
II. 주 요 내 용	4
III. 개 정 의 건	7

I.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1.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허용(§ 68②) / 7
2.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90①) / 9
3.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93①) / 11
4. 집회를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103) / 13
5.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 광고 등 제한 완화(§ 93②) / 14
6. 선거운동 권유·약속을 위한 신분증명서 발급 등 금지 폐지(§ 93③) / 15
7. 선거벽보 첩부매수 산정을 위한 인구비율 조정 등(§ 64) / 16
8. 선거공보 제도 개선 방안(§ 65) / 17
9.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확대(§ 60의3) / 19
10.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타연설회등 허용(§ 101) / 20
1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 축소(§ 60) / 21

12.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 82의6) / 22
13. 선거운동 광고 통합(§ 69, § 70, § 82의7) / 23
14. ‘지역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제한 완화(§ 71) / 24
15.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 허용(§ 109①) / 25

II. 유권자 알 권리의 보장

1.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시기 확대(§ 81, § 82) / 26
2.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108①) / 27
3.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108의3) / 28
4.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 167, § 241) / 29

III. 유권자 참정권 행사 보장

1. 임시기표소 투표절차 규칙 위임 근거 마련(§ 147①) / 30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열람 및 누락자 구제 절차 신설(§ 40, § 43, § 44) / 31
3.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운영 시 입회인 선정 의무화(§ 149) / 32
4. 거소투표 부정으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156) / 33
5. 투표보조인 지명 관련 자율성·책임성 강화(§ 157, § 230) / 34

IV. 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

1. 선거사무 협조 의무기관 등 명확화(§ 5) / 35
2.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등록 신청 방법 신설(§ 49) / 36
3. (사전)투표관리관·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수당 규정 신설(§ 148의2, § 174의2) / 37
4.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 폐지(§ 148②) / 38
5. (사전)투표참관인 신고방법 등 개선(§ 161, § 162, § 213) / 39
6. 투·개표소 출입제한 완화(§ 163, § 183) / 40

V. 선거의 공정성 확보

1. 입후보제한직에 종합편성채널 언론인 추가(§ 53, 규칙 § 22의2) / 41
2.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간 개선(§ 268) / 42
3.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마련(신설) / 43
4.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전면 허용(§ 10) / 44
5. 선거인명부 사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46, § 256) / 45
6. 이의제기 관련 규정 정비(§ 64, § 65, § 110의2) / 46
7. 통상적인 거래가격 산정기준의 예외 항목 인정(§ 122의2) / 47

I. 제 출 배 경

-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절차의 공정성, 선거부정 방지를 통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부정 방지에 집중해 온 결과,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는 어느 정도 확립되었으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최근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이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규제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대표적인 규제·금지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그 전체적인 취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 요소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일률적·포괄적인 금지·규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임.
- 이에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 주무 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자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물로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음.

- 이번 개정의견에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알 권리 보장방안,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방안, 선거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 방안,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특히,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선거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선거부정의혹을 해소함으로써 투·개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의견을 도출하였음.
- 이에 우리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함.

Ⅱ. 주 요 내 용

첫째,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정치적 의사표현은 상시 허용하되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연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 등의 광고를 허용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신분증명서 등 인쇄물의 발급·배부·징구를 금지한 규정을 폐지하며, 선거벽보 첩부와 선거공보 발송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연설회 등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함.

또한 지방공사·공단과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모든 선거에서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광고를 매체(옥외광고물 제외) 및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하고, 후보자등의 방송 연설에 관한 방송시설 제한을 완화하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함.

둘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는 한편,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에 관한 금지 기간을 폐지하고,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허용함.

셋째,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시기표소를 이용한 투표 절차를 규칙에 위임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열람과 명부 누락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신설하며, 기관·시설 내에 기표소 운영 시 일정한 경우 입회인을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소투표와 관련된 제3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투표보조인 지명에 관한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투표보조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넷째, 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 의무가 있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등록 신청 방법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그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구마다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첩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며,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고, 투·개표소 출입 제한을 완화함.

다섯째, 그 밖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편성 채널 언론인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전면 허용하고, 개인정보인 선거인명부 사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선거벽보·공보 등에 관한 다양한 이의제기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 산정기준을 산정하기 힘든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Ⅲ. 개 정 의 건

I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1.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허용[§ 68②]

현 행

-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품 또는 표지물(어깨띠, 모자, 옷, 표찰, 손팻말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는 할 수 없음.
- 후보자 등 외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표지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

※ 헌법재판소 2022. 7. 21. 결정 2017헌가4 (2023. 7. 31.까지 잠정 적용)

개정 의견

-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 또는 표지물을 자신이 착용하는 옷, 거주하는 주택, 승용하는 자동차(법인 소유 여객·화물 운송용 자동차 제외)에 붙이거나 입거나 손으로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우자·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하는 소품 또는 표지물의 제작·구입 비용은 현행과 같이 후보자(대통령선거, 비례대표 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 모두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구입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지물을 붙이거나 입거나 손으로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소품 이용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 비용의 과다소요 및 세 과시를 위한 경쟁적 소품활용으로 선거의 과열이 우려되므로 이를 금지하되,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제한·보전제도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이용하는 선거운동용 소품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90①]

현행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 또는 성명을 나타내는 시설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이 금지됨.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및 '그 밖의 표지물 착용'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

※ 헌법재판소 2022. 7. 21. 결정 2017헌가1·3(병합) 등 (2023. 7. 31.까지 잠정 적용)

개정의견

-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현수막에 한하여 제한없이 허용하도록 함.

	현행 후보자 선거운동 현수막 규정(제67조)	개선안
수량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	제한없음
재질	천	제한없음
규격	10제곱미터 이내	제한없음
게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 게시할 수 없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 걸리게 하는 방법 	좌동 (현행 제한 유지)

제안이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시설물 게시 등은 상시 허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 목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 유권자와 달리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총액 제한으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현수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비용이 많이 들거나 도시 미관을 훼손, 유권자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화환·풍선·간판·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는 제한

3.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93①]

현 행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 또는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의 배부·첩부·게시 등이 금지됨.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

※ 헌법재판소 2022. 7. 21. 결정 2017헌바100 등 (2023. 7. 31.까지 잠정 적용)

개정 의견

-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쇄물 등을 배부(비치 포함)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다만, 도시미관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고려하여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의 첩부·게시를 금지함.

제안이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인쇄물 등의 배부 등은 상시 허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 목적의 인쇄물 등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배부·비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도시미관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고려하여 첩부·게시는 금지하려는 것임. 다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정당 당사 및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첩부·게시할 수 있도록 함.

4. 집회를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103)

현행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 ‘그 밖의 집회나 모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함.

※ 헌법재판소 2022. 7. 21. 결정 2018헌바357, 2018헌바164

개정 의견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모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되,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부작용의 우려가 크므로 후보자, 개인, 단체 모두 금지하도록 함.

제안 이유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집회·모임은 상시 허용함으로써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 과거 합동연설회 등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부작용이 컸던 점, 정당·후보자와 달리 선거비용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고비용·세대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 오늘날 방송과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을 제한하려는 것임.

5.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 광고 등 제한 완화(§ 93②)

현 행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 등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개정의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 출연에 한하여 금지함.

제안이유

-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인쇄물 등을 폭넓게 허용하는 경우, 물품 광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면 가벌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광고는 각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 광고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에 입후보예정자 출연을 허용할 경우 정치 세력과 금력, 언론이 결합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를 제한하려는 것임.

6. 선거운동 권유·약속을 위한 신분증명서 발급 등 금지 폐지[§ 93③]

현 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배부·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개정 의견

선거운동과 관련한 인쇄물의 발급·배부·징구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제안 이유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인쇄물 등을 폭넓게 허용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도 허용되는 인쇄물에 해당하며, 국민 의식의 성숙으로 신분증명서 발급·배부·징구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구속되어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 및 선택의 자유 등 선거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7. 선거벽보 첩부매수 산정을 위한 인구비율 조정 등[§ 64]

현 행

- 선거벽보는 인구수*에 따라 작성·첩부하되 인구밀집 상태 및 첩부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

* 동은 인구 500명에 1매, 읍은 인구 250명에 1매, 면은 인구 100명에 1매

-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선거벽보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제출하고,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첩부함.

개정 의견

- 인구 5천명에 1매까지로 첩부매수 조정비율을 확대함.
-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선거벽보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4일까지 제출하고,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첩부함.

제안 이유

- 선거환경 변화와 벽보의 이미지화로 그 효용성이 크게 줄었음에도 첩부매수가 과다하여 자원낭비, 폐기물 대량 발생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바, 인구 5천명에 1매*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별 첩부 매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좁은 지역에 인구밀집도가 과도하게 높은 동을 최대 기준으로 하고, 읍·면은 차등 조정

- 제출·첩부기한 조정으로 첩부 작업기간을 1일 연장함으로써 벽보 누락, 이중 투입, 지정된 장소 외 첩부 등 사건·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8. 선거공보 제도 개선 방안(§ 65)

현 행

- 후보자·정당(비례대표선거)은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거별 정해진 매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음.
 - ※ 대선 16면 이내, 국선 및 지자체장선거 12면 이내, 지방의원선거 8면 이내
- 대통령선거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후보자 등이 정해진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발송하지 아니함.
- 책자형 선거공보(대선 제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

개정 의견

-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2면으로 작성함.
-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함.
- 대통령선거에서 전단형 선거공보를 폐지함.
- 선거공보 규격을 단일화하여 후보자 등이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발송하지 아니함.
- 책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제출함.

제안이유

- 온라인 플랫폼 다양화, SNS 발달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한정된 선거비용 내에서 선거운동 방법의 자유 확대 필요성이 증대함.
- 선거공보의 기능을 선거운동용 인쇄물에서 공적정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공으로 집중하고 1면의 후보자 홍보내용 유지로 유권자의 기본적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비례대표 선거를 포함한 선거공보 수량이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유권자의 혼란과 무관심이 야기되고, 대규모 선거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대두로 비례대표 선거공보의 온라인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전단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축약판으로 2종 작성에 대한 실익이 적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선거공보 제출기한을 1일 단축하는 대신 발송작업 기간을 1일 연장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9.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확대(§ 60의3)

현 행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명함 배부·지지호소,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한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개정 의견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

현 행	개 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용 인쇄물 첨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함 배부·지지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 등 명함 배부·(개별적)지지호소 장소 제한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관계자 명함 배부·지지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한정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허용 ■ 게재내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이 정하는 면수 이내 제작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100 이내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 본인만의 '착용' 에 의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어깨띠나 표지물을 이용한 홍보 허용 	

○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 포함하되, 후보자로서 보전요건(유효투표 득표율)을 충족하는 경우 보전함.

제안 이유

예비후보자에게도 후보자에 준하여 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임.

10.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타연설회등 허용[§ 101]

현 행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개정 의견

현행 규정을 삭제함.

제안 이유

법 제103조 제3항 개선안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와 모임이 언제든지 허용되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집회·모임의 경우 법 제103조 제3항 및 제256조 제3항 카목에 따라 규제할 수 있으므로 법 제103조 제3항 개선안의 취지에 맞게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제101조와 제103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제256조 제3항 제1호 자목 및 카목)의 형량(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동일

1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 축소[§ 60]

현행

- 지방공사·공단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음.

※ 헌법재판소 2021. 4. 29. 결정 2019헌가11, 2022. 6. 30. 결정 2021헌가24

개정 의견

지방공사·공단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함.

제안 이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
-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상근직원도 조합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

12.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 82의6)

현행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중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음.

※ 헌법재판소 2021. 1. 28. 결정 2018헌가16

개정 의견

현행 규정을 삭제함.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하고,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어 실명확인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13. 선거운동 광고 통합(§ 69, § 70, § 82의7)

현 행

신문·방송광고는 선거별 횟수제한을 두고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허용이 되며, 인터넷광고는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비례대표의원 추천 정당에게 허용되나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한하여 가능함.

개정 의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광고는 횟수제한 없이 모든 선거에서 허용하고, 매체 제한을 폐지하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통한 광고는 제한하도록 함.

여러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지하철·버스 등 내부에 선거광고 허용시 유권자 거부감 발생 가능

제안 이유

선거운동용 광고가 허용되는 후보자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각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광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14. '지역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제한 완화[§ 71]

현 행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는 방송법상 방송시설 중 지역방송시설을,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도록 제한함.

개정 의견

방송시설 제한 규정을 삭제함 【부칙(2000.2.16.)제5조 포함】.

제안 이유

지역방송시설 또는 종합유선방송으로 매체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구를 권역으로 하는 방송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므로 방송시설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15.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 허용[§ 109①]

현행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개정 의견

현행 규정을 삭제함.

제안 이유

오늘날 통신·연락수단의 다양화로 서신을 비롯한 전보, 모사전송(FAX)은 전기통신을 활용한 방법인 전자우편,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대체하고 있고,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선거운동 기회 불균형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에 따라 ARS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II 유권자 알 권리의 보장

1.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시기 확대(§ 81, § 82)

현행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제외) 및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견·정책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 등 개최 가능(단체는 옥내 개최만 허용)
- 다만, 언론기관은 예외적으로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1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개정 의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제외) 및 언론기관은 상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제안 이유

대담·토론회 개최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유권자와 대면접촉이나 언론을 통하여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108①)

현 행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동일 기간 중 공표·보도를 금지함.

개정의견

-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폐지하도록 함.
- 다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행위는 금지하도록 함.

제안이유

-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편승효과 또는 열세자효과 등 여론조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규정하기보다는 이를 폐지하여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활용성 및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임.
- 다만,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결과를 공표·보도하게 되면 사실상 사전투표 출구조사 공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제한하려는 것임.

3.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108의3)

현 행

언론기관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후보자·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나, 후보자·정당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금지됨.

개정 의견

-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여론조사 신고의무가 면제된 언론기관은 후보자·정당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하는 방법으로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및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가 아닌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다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서열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언론기관은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 검증을 위하여 관련 검증자료 일체를 해당 기관 인터넷홈페이지에 등록·보관·공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이의제기를 보장하도록 함.

제안 이유

정책·공약 서열화 평가를 허용하여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되, 검증자료 보관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제기 보장 의무 등 부어로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4.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 167, § 241]

현 행

선거일에 한하여 출구조사가 가능하고, 사전투표기간에는 출구조사가 금지됨.

개정 의견

-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함.
-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안 이유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기간에 출구조사를 할 수 없어 사전투표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출구조사에 반영하는 바, 이는 부정확한 출구조사의 원인이 되므로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허용하여 선거결과 예측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유권자 참정권 행사 보장

1. 임시기표소 투표절차 규칙 위임 근거 마련[§ 147⑪]

현 행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시기표소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정의견

법 제147조 제11항 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를 규정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마련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 (예시) (전략)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 (후략)

※ 임시기표소 투표절차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구체화하여 규정함

제안이유

-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지 못하고 투표사무원이 대리투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과 배치되고,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선거인이 임시투표함에 자신의 투표지를 직접 투입하게 하는 등 임시기표소 투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바,
- 임시기표소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법문에 명확히 하여 법률상 그 위임 범위와 그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열람 및 누락자 구제 절차 신설

[§ 40, § 43, § 44]

현 행

-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됨.
-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열람 및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개정의견

-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열람 및 명부누락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후 3일에 확정됨.

제안이유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확정되어 허위 신고, 접수 누락, 착오 등재 등에 대한 확인·보정기간 및 구제방안이 없는바, 거소투표신고 누락자 등에 대한 구제절차 신설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운영 시 입회인 선정 의무화(§ 149)

현 행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음.

개정 의견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직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함.

제안 이유

투표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직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4. 거소투표 부정으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156)

현 행

제3자가 부정하게 거소투표신고인의 투표를 대리하더라도 해당 거소투표 신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없음.

개정 의견

제3자의 대리투표로 거소투표신고인이 실제 투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투표할 수 있도록 함.

제안 이유

거소투표 관련 대리투표가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자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5. 투표보조인 지명 관련 자율성·책임성 강화[§ 157, § 230]

현 행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개정 의견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자를 「투표보조인」으로 신고 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율 금품 등 제공 대상에 「투표보조인」을 추가함.

제안 이유

- 장애등록여부 및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장애로 인하여 선거인 본인이 법 제157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할 수 없어 투표 보조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후 투표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장애로 인해 투표할 수 없는 자의 투표 편의를 강화하고,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보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투표보조인이 이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여 투표보조인에 대한 매수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IV 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

1. 선거사무 협조 의무기관 등 명확화[§ 5]

현 행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개정 의견

- 관공서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하게 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한 지시 및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시함.

제안 이유

- ‘관공서’는 사전적 의미로 관청과 그 부속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관서’와 공공단체의 사무소인 ‘공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을 지칭함.
- 명칭 및 범위가 모호한 ‘관공서’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당 법조의 수명 주체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임.
- 헌법 제115조 제1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규정의 실현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선거사무 지시권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등록 신청 방법 신설[§ 49]

현행

- 후보자의 등록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재산·병역·세금·전과기록·학력·후보자 등록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개정 의견

- 후보자의 등록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재산·병역·세금·전과기록·학력·후보자 등록경력에 관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행정정보 또는 증명서류의 전자적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도록 함.

제안 이유

IT 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후보자등록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후보자정보 제공을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03.01. 시행 예정)은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곧바로 행정·공공기관 서류를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사전]투표관리관·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수당 규정 신설 [§ 148의2, § 174의2]

현 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상 (사전)투표관리관·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수당은 6만원으로 규정됨.

개정 의견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관리관·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금액을 규정함.

-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 24만원
-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 18만원
- 개표사무원 : 10만원

제안 이유

- 선거사무관계자와 (사전)투표·개표참관인의 수당이 2배 인상되어 상당 부분 현실화가 되었으나,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인상되지 않아 선거사무관계자나 참관인의 수당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당은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투표 및 개표사무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선거관리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는 한편,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장시간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 폐지[§ 148②]

현 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함.

개정 의견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

제안 이유

- 사전투표소는 선거인이 위치를 인지하기 쉬운 관공서·공공기관 등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전 선거 대비 변경률도 미미하여 선거인의 사전투표소 설치장소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높은 수준이며,
- 사전투표소 설치장소는 투표안내문 등 인쇄물 및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첩부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5. [사전]투표참관인 신고방법 등 개선[§ 161, § 162, § 213]

현 행

- 사전투표참관인의 경우 사전투표소별 인원 제한이 없음.
- 정당 등이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 읍·면·동위원회가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함.

개정 의견

- 사전투표소의 참관인을 8명 이내로 함.
- 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로 함.

제안 이유

- 사전투표참관인도 투표참관인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소마다 8명 이내로 제한하여 사전투표소 운영의 공간확보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2 이상의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있을 경우 공정성 담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읍·면·동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사전투표참관인의 예와 같이 지정하여 투표참관인 확보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임.

6. 투 · 개표소 출입제한 완화(§ 163, § 183)

현 행

-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개정 의견

-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의 출입을 허가한 투표협조요원,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 국제선거참관단 등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의 출입을 허가한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 국제선거참관단 등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

제안 이유

- 법문상 투표협조요원, 보도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인, 국제선거참관단 등 투·개표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들까지 일률적으로 투·개표소 출입이 제한되어 매 선거시 예외적 출입 허용범위를 정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활한 투표의 진행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투·개표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투표관리관(개표소의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도 투·개표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투·개표소 출입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려는 것임.

1. 입후보제한직에 종합편성채널 언론인 추가(§ 53, 규칙§ 22의2)

현 행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중 보도전문편성채널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개정 의견

방송채널사용사업 중 종합편성채널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포함함.

제안 이유

-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채널과 큰 차이가 없고,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 종합편성채널을 통한 선거운동 방송 광고·연설 등의 방송과 중계,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해진 점(법 제70조, 제71조, 제82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우려가 있는 집단에 대하여 일정기간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입후보제한직에 종합편성채널 언론인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간 개선(§ 268)

현 행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됨.

개정 의견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

제안 이유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거나 인지한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단속 및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시효 제도를 최소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3.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마련(신설)

현 행

-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결정하는 경우 수사가 종결됨.
- 개정 형사소송법(2022. 9. 10. 시행)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은 제외되고,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불송치되는 경우 후속 불복수단이 없음.

개정의견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범죄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상 특례규정을 마련함.

제안이유

-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폐지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르면,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선거범죄의 경우 해당 경찰의 판단이 종국판단이 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선관위가 검찰항고·재정신청을 통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고발인인 선관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처할 수 있는 후속 불복수단이 없음.
 - 이에, 선거범죄의 엄정한 사법조치를 위해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범죄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상 특례규정 마련하려는 것임.
- ※ 검사는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196②, §245의7②)

4.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전면 허용(§ 10)

현 행

사회단체 등은 기본적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이 가능하되, 법*에서 정한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

*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 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개정의견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단체를 삭제하여 모든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허용하도록 함.

제안이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빙자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해악을 미치려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고, 정당·후보자도 선거부정감시, 투표참여권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단체라고 해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금지할 이유가 없어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5. 선거인명부 사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46, § 256)

현행

구·시·군의 장은 후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작성된 (거소·선상)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교부할 수 있으며, 명부 사본 등은 타인에게 양도·대여, 영리 목적 사용을 금지함.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때 발송수량 범위에서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면 세대주명단(성명·주소)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등은 §46④ 준용(§60의3, §111)

개정 의견

“당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로 용도·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본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의정보고서 관련 세대주명단은 용도·시기 판단 가능

제안 이유

- 후보자 등에게 교부되는 선거인명부 사본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법문상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활용용도·시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명부사본 등의 양도 또는 대여, 영리목적 사용 금지 벌칙(§256③2호 다목)에 그 활용목적을 위반한 이용을 추가하여 후보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목적외 사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6. 이의제기 관련 규정 정비(§ 64, § 65, § 110의2)

현 행

거짓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제64조(선거벽보)·제65조(선거공보)와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제기 대상 범위와 처리절차 등이 상이함.

- 선거벽보·공보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대상이 경력·학력·학위·상별 및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선거공보 한정)이며, 선거관리부서에서 결정 및 공고문 첨부 등 처리(제64조·제65조)
-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대상이 보다 넓고, 조사부서에서 결정 및 홈페이지 공개 등 처리(제110조의2)

개정 의견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이의제기 규정을 제110조의2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으로 통합하도록 함.

제안 이유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의제기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구성요건 및 처리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조문으로 각각 규정하여 이의제기자·피이의제기자·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7. 통상적인 거래가격 산정기준의 예외 항목 인정(§ 122의2)

현 행

선거비용 보전시 모든 청구항목에 대해 예외없이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른 통상거래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전함.

개정 의견

후보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따른 보전을 예외로 하되, 예외로 하는 항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안 이유

선거환경 변화로 선거운동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동영상, 이미지 등과 같이 제작 형태와 방식에 따라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편차가 매우 큰 항목의 경우 실질적인 가격기준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별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지출한도 설정의 효과로 인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창의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위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에 따른 회계보고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하도록 개정 필요